거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의안번호	29

제출일자 : 1998. 8. 22.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 개정이유

○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개편 방침에 따라 의사결정 단계 축소를 위하여 의회사무과 하부조직중 '계제'를 폐지하고

○ 전문위원의 담당사무에 따른 지휘계통을 명확히 하기 바람

▣ 주요골자

○ 계제 폐지에 따른 사무과 하부조직중 "의사계" 항목 삭제

○ 전문위원은 담당 사무에 대하여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하고 그외의 일발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함

▣ 개정근거

○ 경남도 행정 12200 ~ 406 ('98. 6. 22)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제4항

○ 경남도 행정 12200 ~ 614 ('98. 8. 31) 기구정원규정등 개정에 따른 시행지침

거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

거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사무과장과” 다음에 “전문위원 및”을 삽입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전문위원은 담당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조 (조직)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과장과** 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을 두며,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생략) **③ 사무과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의사계와 전문위원을 둔다.**	**제2조** (조직)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과장과 전문위원 및** 직원(이하 "사무직원" 이라 한다)을 두며,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전문위원은 담당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